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907
----------	------

2020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최정순 의원 외 10명
- 나. 제안일 : 2020년 10월 14일
- 다. 회부일 : 2020년 10월 26일
- 라. 상정일 :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11월 26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정순 의원)

가. 제안이유

-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이 조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월 소득액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 해당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민주화를 위한 희생을 위로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의 생활수준 향상 도모를 위하여 이를 기준 중위소득 월 소득액 2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로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월 소득액 2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로 규정함(안 제5조제1항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2020. 10. 29. ~ 11. 5.)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하여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건인 현행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를 중위소득 200퍼센트 이하인 가구로 확대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5조(생활지원금 지급 등) ①	시장	제5조(생활지원금 지급 등) ①	----	
은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다음		-----	
각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		-----	
람	람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	
있	있다. 다만,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	
다	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	2.	-----	
장	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	
중	중위소득의 <u>100퍼센트</u> 이하인 가	-	<u>200퍼센트</u> -----	
구	구(세대)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연도별 중위소득 기준표]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7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2018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2019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202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2021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 본 개정조례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민주화를 위한 희생 위로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의 생활지원금 대상 확대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조례 제정(2019.7.18.)이후, 88명이 생활지원금 혜택을 받았으며,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월 소득액 2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로 확대할 경우 91명이 대상자로 추가될 것으로 보임.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 현황 ('20. 9. 30.기준)]

신 청	선 정	탈 락
267명	88명(33.0%)	179명(67.0%)

- 다만, 다른 광역시·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의 경우에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서울시 국가유공자 등 대상 예우 및 지원 사업의 경우 중위소득보다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다른 광역 시·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금액 및 소득기준]

구 분	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	비 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광주광역시	10만원	100%
	전라남도	10만원	100%
	경 기 도	10만원	100%
	충청남도	10만원	100%

[서울시 국가유공자 등 대상 예우 및 지원 현황]

구 분		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	비 고
국 가 보 훈 대 상 자 (419, 518 유공자 포함)	생활보조수당	10만원	50%	65세 이상 ※ 중복지원 불가
	보훈명예수당	10만원	-	
독 립 유 공 자	생활지원수당	20만원	70%	자녀 또는 손자녀
	보훈명예수당	20만원	-	독립유공자 본인
참 전 유 공 자	참전명예수당	10만원	-	

※ 2020년 각 사업별 기준 중위소득 현황

(단위 : 원/월)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비고
200%	3,514,388	5,983,960	7,741,154	9,498,348	11,255,542	13,012,736	
⋮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85%	1,493,615	2,543,183	3,289,990	4,036,798	4,783,605	5,530,413	서울형 간급복지
80%	1,405,755	2,393,584	3,096,462	3,799,339	4,502,217	5,205,094	청년꿈나래통장 희망온돌기금
75%	1,317,896	2,243,985	2,902,933	3,561,881	4,220,828	4,879,776	국가간급복지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교육급여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주거급여
43%	755,593	1,286,551	1,664,348	2,042,145	2,419,942	2,797,738	서울형 기초보장
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의료급여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또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을 중위소득 200퍼센트 이하 가구로 확대할 경우 지원대상(국가유공자)간 형평성 저해의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바, 관련 법 제·개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추이 등을 살펴 명예수당으로의 전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 대표발의 :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 2020. 9. 23. 발의
- 주요내용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 등에 대한 예우에 관해 규정
 -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
 - 각종 기념·추모사업 실시 및 민주화운동 관련 시설물이나 교양시설 설치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생활지원금 지급 조건 중 월 소득액 기준은 현행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로 하고,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생활지원금 지급 조건 중 월 소득액 기준은 현행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로 함(안 제5조제1항제2호).
- 65세 이상 민주화관련자로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제1항).

-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의 지급금액, 지급 절차 등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 조례의 시행일을 2021년 7월 1일로 정함(안 부칙).

8.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1907
----------	-------------

제안년월일 : 2020년 12월 16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생활지원금 지급 조건 중 월 소득액 기준은 현행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로 하고,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생활지원금 지급 조건 중 월 소득액 기준은 현행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로 함(안 제5조제1항제2호).
- 65세 이상 민주화관련자로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제1항).
-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의 지급금액, 지급 절차 등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 조례의 시행일을 2021년 7월 1일로 정함(안 부칙).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제1호 중 “200”을 “100”으로 한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① 시장은 65세 이상 관련자로서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제5조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원받는 자는 지급대상
에서 제외한다.

② 그 밖에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안 부칙 중 “공포한 날”을 “2021년 7월 1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5조(생활지원금 지급 등) ① 시장은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생 략)</p> <p>2.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p> <p>②、③ (생 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5조(생활지원금 지급 등)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 ----- 2 <u>00</u>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생활지원금 지급 등) ① (현행과 같음)</p> <p>2. ----- ----- ----- 1 <u>00</u>----- ---</p> <p><u>제6조(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①</u> 시장은 65세 이상 관련자로서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제5조에</p>

<p><u>제6조</u> (생 략)</p> <p><u>제7조</u> (생 략)</p> <p><u>제8조</u> (생 략)</p>	<p>따라 생활지원금을 지원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p> <p>② 그 밖에 민주화운동 명예수당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u>제7조</u> (현행 제6조와 같음)</p> <p><u>제8조</u> (현행 제7조와 같음)</p> <p><u>제9조</u> (현행 제8조와 같음)</p> <p>부칙 이 조례는 <u>공포한 날</u>부터 시행한다.</p>	<p><u>따라 생활지원금을 지원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u></p> <p><u>② 그 밖에 민주화운동 명예수당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p> <p><u>제7조</u> (현행 제6조와 같음)</p> <p><u>제8조</u> (현행 제7조와 같음)</p> <p><u>제9조</u> (현행 제8조와 같음)</p> <p>부칙 이 조례는 <u>2021년 7월 1일</u>부터 시행한다.</p>
-------------------------------------------------------------------------	----------------------------------------------------------------------------------------------------------------------------------------------------------------------------------------------------------------------------	------------------------------------------------------------------------------------------------------------------------------------------------------------------------------------------------------------------------------------------------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① 시장은 65세 이상 관련자로서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제5조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원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그 밖에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u>〈신 설〉</u>	<p><u>제6조(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u></p> <p>① <u>시장은 65세 이상 관련자로서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제5조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원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u></p> <p>② <u>그 밖에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p>
<u>제6조</u>	(생략)	<u>제7조</u> (현행 제6조와 같음)
<u>제7조</u>	(생략)	<u>제8조</u> (현행 제7조와 같음)
<u>제8조</u>	(생략)	<u>제9조</u> (현행 제8조와 같음)